

#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32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1/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「재난심리안정 지원비용 사용가능」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(안 제5조- 전문개정)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가 2012. 8.23. 개정 ·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」을 추가 반영하고, 아울러 경기도 조례를 참조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함
-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의 근거법령 변경 (안 제6조- 전문개정)
-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 (안 제1,2,3,8,12,- 일부개정)

## □ 개정 조례안 : 불임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, 제74조, 제75조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 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사전 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기간 : 2012.10.20. ~ 11.2.(21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 조례

#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·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기금은” 을 “재난관리기금(이하 ”기금 “이라 한다)은” 으로 하고 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에 따른” 으로 하며, 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3조 중 “시장은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 으로 하고,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8조에 따라” 로 하며 , “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5조 제2항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
가.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

나.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수 · 보강사업

다.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, 장비 등의 사용

- 라.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·보강사업
  - 마.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, 재난대응·대비 훈련
  - 바. 풍수해, 설해, 낙뢰,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, 장비 등의 사용
  - 사.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
  - 아.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자.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.  
    다만, 유지관리는 제외한다.
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·보강 사업
  3.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·보강 사업
    - 가.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산간 계곡 등의 자동경보시설 등
    - 나.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
    - 다.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
  4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    - 가. 수해·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    - 나. 상습가뭄·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
  5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    - 가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·물자 구입
    - 나.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
    - 다.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
  6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    -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
    -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재해지도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
    -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 측량
  7. 법 제 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  8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
 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) ① 영 제74조제1호 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.  
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,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  
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제8조 제2항 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삭제한다.

제12조 제2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의회”를 “안산시의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재난안전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성명	재난안전과장 이 장 원
	담당·팀장 직위성명	재난예방계장 임 병 권
	담당자 성명전화	임 병 권 (행정 2725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,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4조,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 ·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</li> <li>2. (생 략)</li> <li>3. 기타 잡수입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67조에 따른 ---.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그 밖의 잡수입</li> </ol>
<p>제3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 시장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·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-----</p> <p>-----제8조에 따라 -----</p> <p>-----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5조 제2항에 따른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5조(기금의 용도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</p> <p>가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</p>	<p>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</li> <li>나.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</li> </ol> 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u>분야 재난 예방활동</u>	<u>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수 · 보강사업</u>
<u>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 · 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 · 보강사업</u>	<u>다.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, 장비 등의 사용</u>
<u>다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</u>	<u>라.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 · 보강사업</u>
<u>라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</u>	<u>마.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, 재난대응 대비 훈련</u>
<u>마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</u>	<u>바. 풍수해, 설해, 낙뢰,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, 장비 등의 사용</u>
<u>바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· 연구</u>	<u>사.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</u>
<u>&lt;본호개정 2011.9.21&gt;</u>	<u>아.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</u>
<u>2.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&lt;개정 2011.9.21&gt;</u>	<u>자.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. 다만, 유지관리는 제외한다.</u>
<u>3.&lt;삭제 2011.9.21&gt;</u>	<u>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 · 보강사업</u>
<u>4.&lt;삭제 2011.9.21&gt;</u>	<u>3.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 · 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 · 보강사업</u>
<u>5.&lt;삭제 2011.9.21&gt;</u>	<u>가.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 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산간계곡 등의 자동경보시설 등</u>
	<u>나.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</u>
	<u>다.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</u>
	<u>4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</u>
	<u>가. 수해 ·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</u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나. 상습가뭄·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</u></p> <p><u>5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</u></p> <p><u>가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 한 장비·물자 구입</u></p> <p><u>나.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</u></p> <p><u>다.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</u></p> <p><u>6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</u></p> <p><u>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 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</u></p> <p><u>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재해지도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진단</u></p> <p><u>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 측량</u></p> <p><u>7. 법 제 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</u></p> <p><u>8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</u></p> <p><u>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</u></p> <p><u>제6조 (임대주택 이주지원 임차비용 융자 등) ①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의 규모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내로 한다. &lt;개정 2011. 9. 21&gt;</u></p> <p><u>②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, 융자한 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</u></p> <p><u>제6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)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 &lt;개정 2011.9.21&gt;</u></p> <p><u>③ 그 외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u>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,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</u></p> <p><u>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</u></p>
<p><u>제8조 (회계공무원) ① (생 략)</u></p> <p><u>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8조 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② -----기금출납원은 기금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u></p>
<p><u>제12조 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u></p> <p><u>① (생 략)</u></p> <p><u>② (생 략)</u></p> <p><u>1. ~ 3. (생 략)</u></p> <p><u>4.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<u>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<u>시의회에</u>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12조 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u></p> <p><u>①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②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1. ~ 3.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4. 그 밖에 기금의 ----- -----.</u></p> <p><u>③ ----- -----<u>안산시의회에</u> ----- ---.</u></p>